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에 관한 연구

The Victimization of Stal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ong-Won Sin(police7@dhu.ac.kr)

요약

스토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18명(5.5%)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성 대학생이 남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대상자 중 4명(1.3%)만이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둘째, 스토킹 가해자인 스토킹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26세까지 대학 재학 연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치정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의 방법은 전화·편지·선물공세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 피해의 지속기간은 주로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 피해는 덜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스토킹 가해자가 그냥 멈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어 피해자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중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스토킹 | 스토킹자 | 위협 | 괴롭힘 | 실태 |

Abstract

Stalking is defined as an abnormal or long term pattern of threat of harassment directed toward a specific individual and obsessional following. This study use empirical method based on the self administrated questionnaire of 325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for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18(5.5%) students experienced the victimization of stalking.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stalking than male. 4(1.3%) of students were stalkers. Second,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stalkers than male. The age of most stalkers were younger than 27 yrs.. And most stalking victims knew their stalker. Third, the most cause of stalking was revenge for denial of courtship. The most methods of stalking were making approaches and the communications via letter, telephone, and giving presents. And the most period of Stalking was in 6 months.

■ keyword : | Stalking | Stalker | Threat | Harassment | Actual Conditions |

I. 서론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수법도 다양화·지능화 되어가고 다양한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토킹은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스토킹은 서구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까지 스토킹 관련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침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률의 제정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 관련 문제들의 사회적 확산과 더불어 대학생과 관련된 스토킹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은경 연구위원의 “스토킹 피해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여자 대학생의 22.9%, 남자 대학생의 7.6%가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대학생과 관련된 스토킹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면, 2006년 1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럽 배낭여행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자신을 괴해서 미국으로 도망가자 여자친구의 누드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여자친구의 아버지 휴대폰으로 누드 동영상을 보내어 여자친구를 위해 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남자대학생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2]. 2005년 1월 12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방화와 성폭행 미수, 주거침입, 협박을 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일삼던 대학생을 구속하였다[3]. 2004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특정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200여 차례 보내고,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대학생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4]. 한편, 2002년 9월 26일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고려대학교 휴학생 김모씨가 2년 4개월가량 같은 과 후배 여학생 이모씨를 스토킹해 이씨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

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5]. 2001년 11월 25일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학부동료인 여학생의 휴대폰에 수차례 욕설을 남기는 등 전화 스토킹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나모씨에 대해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6].

이처럼 대학생과 관련된 스토킹 문제는 질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스토킹 문제는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이 시기에 스토킹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을 학습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동일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문제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과 관련된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스토킹의 의의

스토킹은 일부 인기연예인의 스토킹 피해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기 시작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생소한 용어였다[7].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과 스토킹의 가해자인 스토키라는 용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이처럼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개념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든지 스토키라고 해버리는 풍조가 생겨서 이전에는 ‘변태’, ‘치한’, ‘관음증 환자’ 등으로 일컬어졌던 부류의 사람까지도 모두 스토키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통일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8].

몇몇 학자들에 의한 스토킹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eloy와 Gothard는 스토킹을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정의하였다[9]. 그리고 위협 또는 괴롭힘의 형태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한 피해자에 대한 1회 이상의 명백한 원치 않는 추적이라고 밝혔다[10].

Pathe와 Mullen은 스토킹을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침해와 의사소통을 하여 괴롭히는 행태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침해에는 미행, 어슬렁 거림, 감시하기, 접근하기, 편지·전화·전자우편을 통해 연락하기, 피해자의 차 등에 낙서 또는 글을 남기기 등이 있다[11].

Westrup은 DSM-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정확한 침해에 대한 기준을 가진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였다. Westrup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였다.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태가 1개 이상 나타나는 것이다. (a) 특정한 개인(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b) 대상자에게 달갑지 않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짐, (c)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대상자와 관계를 가짐[12].

이상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킹은 '상대방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계속 쫓아다니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거나 선물공세를 펴므로써,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과 불쾌감, 나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스토킹의 유형

스토커가 어떠한 유형으로 특징인에 대한 집요한 집착을 실행하는가는 스토커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만약 스토커의 주요수단이 명확히 파악된다면, 스토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의 강구에 유효할 것이다[13].

스토커들의 행위유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스토커의 행위를 범주화하기가 어렵고, 또한 행위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성을 가진 분류로는 전미피해자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스토킹 유형을 들 수 있다[14].

첫째, 가장 흔한 유형으로 단순집약형(simple obsessional type)이 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전에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된다고 한다. 상당수의 사례가 전남편 또는 전처, 옛 애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유형의 스토킹은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 발생하며 스토커의 과도한 집착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 동기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 내지는 복수를 위해 단순히 괴롭히고자 하는 데 있다.

둘째, 애정집착형(love obsessional type)이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이전에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는 점에 있다. 주된 피해자들은 대중매체에 노출된 공인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스토커들은 대다수가 정신분열증 등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토킹의 시작은 주로 전화를 걸어 데이트를 신청하며, 거절되면 점차 위협적인 언행을 행사하나, 대부분 단순 집약형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 한다.

셋째, 애정망상형(erotomaniac type)이다. 이 유형은 스토커 자신이 피해자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집착형과 구별된다. 이러한 유형의 스토커들은 피해자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띠지만, 실제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넷째 유형으로는 왜곡된 피해망상형(false persecution maniac type)이다. 실제 스토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짓의 상황을 설정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15].

최근에 Mullen 등은 스토킹의 동기를 좀 더 세분화하여 스토커를 ① 거절경험형(the rejected) ② 친밀감추구형(the intimacy seeker) ③ 무능력자형(the incompetent),

④ 분개형(the resentful) ⑤ 침탈형(the predatory)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6].

III.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 실태

1. 조사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개 도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하고, 이를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400부를 배포하여 350부를 회수하였으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통계처리를 하기에 부적합한 2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5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PSS 14.0을 활용하였다.

2. 조사결과

2.1 스토킹 피해·가해 경험

표 1. 스토킹 피해 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남성	8 4.6%	166 95.4%	174 100.0%
여성	10 6.6%	141 93.4%	151 100.0%
계	18 5.5%	307 94.5%	325 100.0%

조사대상자 중 18명(5.5%)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가 있는 응답자 중 남성이 8명(4.6%), 여성이 10명(6.6%)으로 여성 대학생이 남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스토킹 가해 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남성	3 1.8%	165 98.2%	168 100.0%
여성	1 0.7%	150 99.3%	151 100.0%
계	4 1.3%	315 98.7%	319 100.0%

조사대상자 중 4명(1.3%)만이 누군가를 스토킹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남성은 3명(1.8%), 여성은 1명(0.7%)으로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스토킹 피해경험*가해경험

	가해경험 있음	가해경험 없음	계
피해경험 있음	1 5.6%	17 94.4%	18 100.0%
피해경험 없음	3 1.0%	298 99.0%	301 100.0%
계	4 1.3%	315 98.7%	319 100.0%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명(5.6%)은 스토킹 가해경험도 있으며, 스토킹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298명(99.0%)은 스토킹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2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

표 4.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남성	8	47.1
여성	9	52.9
계	17	100.0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이 8명(47.1%), 여성이 9명(52.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

연령	빈도	퍼센트
10대-26세	11	61.1
27-29세	2	11.1
30대	1	5.6
40대	1	5.6
50대 이상	2	11.1
미상	1	5.6
계	18	100.0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0대 후반부터 26세까지 대학 재학 연령에 있는 사람이 11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연령대는 1-2명으로 큰 차이가 없이 소수로 나타났다.

표 6.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관계	빈도	퍼센트
옛 애인	7	38.9
학교 친구	1	5.6
친구(학교 외)	1	5.6
안면만 있는 사람	5	27.8
모르는 사람	2	11.1
현재 애인	1	5.6
기타	1	5.6
계	18	100.0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옛 애인이 7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안면만 있는 사람이 5명(27.8%)으로 나타났다. 그 외는 1-2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는 친정관계 또는 다소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3 스토킹의 양태

표 7. 스토킹의 원인

스토킹의 원인	빈도	퍼센트
내 관심을 끌기 위해	3	16.7
나를 독점하기 위해	3	16.7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	4	22.2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3	16.7
그냥 재미삼아	1	5.6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3	16.7
기타	1	5.6
계	18	100.0

조사응답자가 생각하는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이 4명(22.2%)로 가장 많았으며,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나를 독점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각각 3명(16.7%)로 나타났다.

표 8. 스토킹의 방법

스토킹의 방법	빈도	퍼센트
전화/편지/선물공세	11	61.1
PC를 통한 괴롭힘	2	11.1
비방/명예훼손/헛소문	1	5.6
집/등하교길에서 기다림	3	16.7
미행	1	5.6
계	18	100.0

스토킹 피해자가 경험한 스토킹의 방법은 전화·편지·선물공세가 11명(61.1%)로 가장 많았으며, 집 또는 등하교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경우 3명(16.7%), PC를 통한 괴롭힘 2명(11.1%), 비방·명예훼손·헛소문 등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 1명(5.6%), 행선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1명(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스토킹의 지속기간

스토킹의 지속기간	빈도	퍼센트
1개월 이내	5	27.8
1-3개월	4	22.2
3-6개월	3	16.7
6-12개월	2	11.1
1년 이상-3년 미만	2	11.1
3년 이상	2	11.1
계	18	100.0

스토킹 피해의 지속기간은 1개월 이내가 5명(27.8%)로 가장 많았으며, 1-3개월 4명(22.2%), 3-6개월 3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의 66.7%가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 동안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 스토킹의 피해

스토킹의 피해	빈도	퍼센트
불쾌감·분노감	6	33.3
신체적 위협에 대한 불안	1	5.6
전화받기 두려움	3	16.7
외출하기 두려움	1	5.6
일상생활에 지장초래	3	16.7
기타	4	22.2
계	18	100.0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받은 구체적 피해는 불쾌감·분노감이 6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받기 두려움 3명(16.7%), 일상생활에 지장초래 3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수준의 감정적 피해가 주로 이루어졌고, 불면증·약물·노이로제(정신과 치료), 직장 및 학업중단, 가정파탄, 자살기도 같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는 호소하지 않았다.

2.4 스토킹에 대한 대응

표 11. 초기 스토킹 대응방법

대응방법	빈도	퍼센트
그냥 당했다	3	16.7
가해자를 설득	8	44.4
화를 냈다	3	16.7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1	5.6
전화번호변경/이사	1	5.6
전화국에 발신자 추적신청	1	5.6
기타	1	5.6
계	18	100.0

스토킹 피해 초기의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설득한 경우가 8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냥 당하거나, 화를 내고 싸운 경우가 각각 3명(16.7%)으로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2. 지속적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방법

대응방법	빈도	퍼센트
그냥 당했다	1	5.6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	2	11.1
화를 내고 싸웠다	2	11.1
무조건 피해 다녔다	4	22.2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5	27.8
무시했다	4	22.2
계	18	100.0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의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이 5명

(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조건 피해 다녔다, 무시했다 각각 4명(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 발생시에는 스토킹 피해 초기와는 달리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초기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표 13.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미신고 이유	빈도	퍼센트
기분 나쁘지 않아서	1	5.9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7	41.2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6	35.3
신고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3	17.6
계	17	100.0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가 7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처벌을 원치 않아서) 6명으로 35.3%, 신고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3명(17.6%), 기분 나쁘지 않아서 1명(5.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스토킹의 중지

표 14. 스토킹의 중단계기

스토킹의 중단계기	빈도	퍼센트
아직도 진행 중이다	4	22.2
대화로 해결	1	5.6
주위사람들의 도움	1	5.6
그냥 멈추었다	9	50.0
경찰에 신고	1	5.6
기타	2	11.1
계	18	1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서 스토킹이 멈

추게 된 계기도 스토킹 가해자가 그냥 멈춘 경우가 9명(5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스토킹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4명(22.2%)에 달하였다. 따라서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중지에 의하여 중단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스토킹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을 학습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동일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18명(5.5%)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성 대학생이 남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대상자 중 4명(1.3%)만이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보다 스토킹 가해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명(5.6%)은 스토킹 가해경험도 있으며, 스토킹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298명(99.0%)은 스토킹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토킹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토킹 가해자인 스토킹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스토킹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26세까지 대학 재학 연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치정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의 방법은 전화·편지·선물공세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 피해의 지속기간은 주로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스토킹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 피해는 덜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스토킹 가해자가 그냥 멈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어 피해자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중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스토킹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멈출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토킹에게 확고한 자신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전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국가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 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17].

한편,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스토킹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대응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신고율 또한 매우 저조하다고 선행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태도여부가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의 신고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약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이웃이나 친구·가족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므로, 신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다면 범죄신고를 꺼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일반 시민의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방지법이 입법화 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지고,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노력한다면 신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는 스토킹으로부터 집중적 애정공세와 선물공세가 이루어진다. 타인의 호의나 선물을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단계에는 설득하거나 가능성을 보여 주는 태도는 금물이고 확실하고 냉정한 거절의 표시가 필요하며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누군가 집요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다니도록 한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혼자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스토킹 피해의 두 번째 단계에는 협박 또는 위협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는 어느 정도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상대방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공포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자신의 성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협박 또는 위협의 단계에 이른 스토킹은 매우 집요해지기 때문에 아예 스토킹으로부터 확실히 사라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이사를 가버리거나 배낭여행 혹은 집안에서의 요양 등으로 스토킹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의 협박 또는 위협이 심해지면 스토킹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정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점점 더 집요해지면 스토킹의 가족들에게도 알려 공조체제를 형성해 차츰 나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스토킹의 말기 단계에는 엄청난 폭력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폭력이라도 확실한 진단서등을 떼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토킹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둘 사이의 비공식적인 구두 사과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두어야 한다. 스토킹은 한 번의 폭력 행사 후 사과하고 또 괴롭히는 것을 반복한다. 그냥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의 학생회 또는 여학생회를 통해 대자보를 붙인단든지 하는 아주 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스토킹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대학생들은 위와 같은 스토킹에 대한 단계별 대처법을 잘 염두 해 두고 스토킹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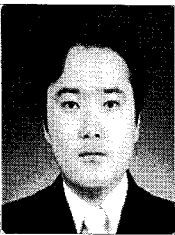
- [1] 연합뉴스, 2003년 6월 18일자.
- [2] 서울신문, 2006년 1월 10일자.
- [3] 연합뉴스, 2005년 1월 12일자.
- [4] 연합뉴스, 2004년 12월 31일자.
- [5] 연합뉴스, 2002년 9월 26일자.
- [6] 연합뉴스, 2001년 11월 25일자.
- [7] 이기현,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p.325, 2002.
- [8] 양환호, 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002.
- [9] J. R. Meloy and S. Gothard, "A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p.259, 1995.
- [10] P. E. Mullen, M. Pathe, and R. Purcell,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7, 2000.
- [11] M. Pathe and P. E. Mullen, "The Impact of Stalkers on Their Victim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4, p.12, 1997.
- [12] D. Westrup, *Applying Functional Analysis to Stalking Behavior*, In Meloy, J. Reid(Ed.), *The Psychology of Stalking :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San Diego : Academic Press, p.276, 1998.

- [13]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p.292, 2001.
- [14] 정진수, *신종성폭력연구-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91-196, 2000.
- [15]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pp.296-297, 2001.
- [16] P. E. Mullen, “A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pp.1244 -1249, 1999.
- [17]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9권, 제1호, p.107, 2001.

저자 소개

신성원(Seong-Won Sin)

정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 행정학부(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 행정학부(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 행정학부(경찰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청소년비행